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중 농산과 소관 제13호 다음에 제14호 내지 제 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농산과	14	양곡가공업시설의 등록	양곡관리법 제19조
	15	양곡가공업시설의 양도 임대·변경신고,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신고	양곡관리법 제19조 제3항 동법시행령 기준
	16	양곡가공업에 대한 영업 의정지 등록의 취소	양곡관리법 제21조 제1항
	17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영위한자 등에 대한 벌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양곡관리법 제36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